

자동차 공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산발성 근위축성측삭경화증

성별	남성	나이	만 51세	직종	자동차 공장 근로자	직업관련성	높음
----	----	----	-------	----	------------	-------	----

1 개요

근로자 망 ○○○은 □사업장에 1990년 8월 입사하여 2020년 2월까지 엔진부에서 약 29년 7개월 동안 엔진조립, 엔진착화테스트, 엔진출하(지게차) 물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는 2019년 9월에 양쪽 종아리 멍치는 증상이 생겼고, 2019년 11월부터 보행 시 우측으로 몸이 쏠리는 증상이 동반되었다. 2020년 2월 증상이 지속되고 발음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 A대학병원 내원해 근전도검사 후 2020년 2월 27일 산발성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을 진단받았다. 이후 보존적 치료 중 2023년 1월 11일에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근로자는 엔진부에 근무할 당시 방청유, 휘발유, 부동액, 타이어 가루, 디젤 매연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해당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업무상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4월 21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관련성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 작업환경

근로자는 1990년 8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상병 확진 받은 2020년 2월 27일까지 약 29년 7개월 동안 엔진부에서 엔진조립, 엔진착화테스트, 엔진출하(지게차) 물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는 엔진부 조립반에서 엔진착화테스트, 엔진조립, 엔진출하 업무를 약 15년 7개월간 수행하였다. 이후 공정이전을 통하여 엔진테스트 룸을 제외한 엔진조립, 지게차운전, 설비관리 등의 업무를 약 14년간 수행하였다. 입사초기에는 주 6일 근무로 1일 10시간씩(정규 8시간, 잔업 2시간) 근무하였으며, 월 2회 정도 일요일에 8시간씩 현장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특근을 하였다. 개선특근은 전기용접, 산소절단, 페인트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다. 2009년부터는 주 5일 근무, 1일 10시간씩 주야 교대 근무와 월 2~3회 생산특근을 하였고, 2013년부터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주간연속 2교대 근무를 하며, 월 2~3회 생산특근을 하였다.

3 해부학적 분류

- 신경계 질환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

5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2019년 9월부터 양쪽 종아리 뭉치는 증상이 생겼고, 2019년 11월 평지 걸을 때 우측 발이 무겁고 끌리는 증상이 발생하였다. 2019년 12월부터는 보행 시 우측으로 몸이 쏠리는 증상이 발견되었다. 2020년 1월부터는 걸을 때 다리가 뻣뻣하고 종아리 뭉치는 증상 지속되어 B종합병원에서 경추, 요천골(lumbosacral) MRI 등 검사하였으나 특별한 이상 없었다. 2020년 2월 증상 지속되고 발음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 A대학병원 내원해 근전도검사 후 2020년 2월 27일 산발성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을 진단 받았다(진단 당시나이 51세). 이후 보존적 치료 중 2023년 1월 11일에 호흡기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근로자 및 유족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는 2000년 이후 금연하였고 금연하기 전 흡연 기간·양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근로자 진술 및 동료 근로자 진술 상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C대학병원 2020년 초진 의무기록에 따르면 근로자는 2002년 우측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받았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3년 1월 B종합병원에서 전립선비대증을 진단받았으며, 2019년 D대학병원 의무기록 상 전립선비대증으로 약 복용 중이었던 것 확인되었다. 또한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9년 5월 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으로 처음 진료 받았으며 2019년 9월 D대학병원에서 관련해 약 처방받은 것 확인되었다. 그 외에 질병력은 없었고, 유족의 진술 상 근로자의 신청 상병과 관련된 가족력은 없었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망 ○○○(남, 1969년생)은 만 51세가 되던 2020년 2월에 산발성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사업장에 1990년 8월 입사하여 상병 확진된 2020년 2월까지 엔진부에서 엔진조립, 엔진착화테스트, 엔진출하(지게차) 물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의 질병인 산발성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의 직업환경 요인으로 중금속(납 등), 유기용제, 유기인계농약, 과도한 신체활동, 디젤배기가스 등이 있다. 근로자는 엔진부에서 약 29년 7개월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입사직후부터 약 15년 7개월 동안 엔진 착화 테스트 작업을 하며 휘발유에 포함된 납, 벤젠 등에 노출되었고, 공정개선에 따른 용접 및 도장 작업 시 용접흡, 중금속, 유기용제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시 대기 중이던 물류차량에서 발생된 디젤배기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산발성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끝.